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7주년 기념  
심포지움

A4- 54

##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 접근권,

##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2-16 진일빌딩 2층  
전화: (02)521-5364 / 전송: (02)584-7701

값: 3천원

일시 : 1994. 12. 15(목) 오후 3 : 30

장소 : 정립회관 대강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 차례

---

### 주제발제

- 1>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접근권의 실현방안과 전망  
김종영(계명대 건축공학과 교수) ..... 7

### 2> 법률적 의미로 본 장애인 접근권

- 강경선(방송대 법학과 교수) ..... 17

### 토론발제

- 1>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기준설정과 법적실행방안  
이기하(보건사회부 장애인복지과 과장) ..... 32

### 2> 도시환경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미래상

- 조성룡(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사무국장) ..... 47

### 3>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의 참여방안

- 김선규(대구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이사) ..... 55

### 부록

- ..... 65

##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접근권의 실현방안과 전망

김종영(계명대 건축공학과 교수)

##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접근권의 실현방안과 전망

김종영(계명대 건축공학과 교수)

### 1. 접근권에 관한 논의들

지금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국내의 연구나 논의들은 대체로 장애인들의 이동이나 접근권 확보문제에 그 포커스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접근권이라는 용어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를 편의시설과 관련시켜 보면 <장애인들이 도시, 건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으로 함축될 수 있을 것이다.

권리는 법으로 보장받아야 하므로 이 접근권문제는 국가나 사회가 장애인에게 베푸는 어떤 특혜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시민들을 위해 마땅히 확보해 주어야 할 사항인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들이 겪는 두 가지 큰 장벽이 있다고 본다. 그 첫째는 도시, 건축시설에서 부딪치는 물리적인 장벽이며, 둘째는 사회의 편견 및 무관심, 법, 제도, 정책상의 불합리로 인해 겪는 사회적 장벽이 그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물리적 장벽보다 사회적 장벽이 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가 외적 표출이라면 후자는 내적 동인(動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양측이 갖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내년부터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 속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행정, 정책, 기구등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문제도 그 추진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본 과제도 그러한 시도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접근권 확보문제에 관한 그간의 논의들을 정리해 보면, 우선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법이나 규칙으로 제정하여 강제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과제들을 실제로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제안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편의시설 문제는 물리적인 시설 그 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사회전반의 현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여러가지 대안들이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실현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의 내용들도 아직까지 하나의 제안에 불과함을 미리 전제해 둔다. 다만 극히 단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건축, 도시시설의 계획 및 설계, 시공, 사후 관리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보다 구체적인 접근권의 실현방안과 그 전망에 대해서,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하여 나름대로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의 과제

### <규칙 안의 개요>

모든 시설의 계획 및 설계에는 관련 법이나 기준이 그 모체가 되는데 그간 장애인 편의시설설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제상의 미비점과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국내의 도시나 건축물에 있어서 물리적 장애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외국의 기준이나 사례들에 비추어 개선의 내용, 범위등을 제시하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시도들이었다. 이들의 공통된 지적은 우리의 관련법규나 기준이 지나치게 단편적이라는 점과 그나마도 여러 분야 법에 산재해 있어 시행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모범은 있으나 시행령, 시행세칙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들이었다.

따라서 지난 7월 행정당국에 의해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안>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10여년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그간에 이와같은 규칙안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한 결실을 거두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이다.

이제 여기서 그 내용을 개괄하면, 우선 제정의 이유로서 장애인 복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세부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이었다.

대상시설로서는 령 제 30조에 규정된 시설로 하되 장애인 전용시설 및 불특정다수인의 이용도가 높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을 의무시설로 하고 그 이외 시설은 권고시설로 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법령에 별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정하여진 사항은 그 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기존 시설, 설비의 정비는 권고를 원칙으로 하고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이 규칙 시행후 5년 이내에 개선하도록 하며 시·도지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고 대상시설, 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규칙의 세부설치기준에 적합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이 기준에 부적합한 의무시설, 설비는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가 시정, 명령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1년 이내에 이 기준에 적합하게 시정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대상시설: 근린공공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운수시설, 방송통신시설,

-설치기준항목: 써어큐레이션과 관련된 항목/ 도로, 경사로, 출입구, 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세니터리 시설/ 장애인용 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탈의실등

-기타: 객실, 침실, 관람석, 주차장, 유도신호장치, 교통시설, 통신시설, 기타공중이용시설, 안내표시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 <규칙안에 대한 검토>

이 규칙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각도에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지적된 대로 대상시설의 범위 확대문제,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문제, 지하도, 지하상가등의 편의시설을 권고시설에서 의무시설로 하는 문제등 추가 또는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발견된다.

실제로 이 규칙안대로라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시설들의 상당수가 법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소규모의 일용품점, 의원, 약국, 슈퍼등이 모두 이 법의 범주밖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 규정에 적용 받는 건축물은 대단히 제한적인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건물을 강제규정으로 묶는다는 것 역시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모든 시설을 휠체어 사용자나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사실상 무리라고 본다. 따라서 Goldsmith의 견해를 참조하여 휠체어 사용자까지 고려해야할 시설과 그렇지 않고, 보다 경한 장애인의 사용을 고려해도 무방한 시설, 단순히 접근만 가능하면 되는 시설과 접근하여 이용까지 할 수 있어야 하는 시설, 단순히 이용만 하면 되는 것과 그 속에서 작업이나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규정의 준수가 의무적인 시설과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규정들이 대부분 외국의 기준들을 준용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적 조건이나 여건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작업이 부족한 것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 이외의 장애인,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이나 클러치 사용인측에서도 이 기준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건축법, 도시계획법, 주차장법등 관련법에서 이들 해당조항을 제시하고 실제적인 관련지침서를 작성하여 시행토록 하는 작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여건에 따라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항들은 필수로 하되 보다 창의적인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모범이나 시행령에서 미비한 사항,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계획 및 설계과정에서의 검토>

도시시설의 정책결정이나 시행은 대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된다. 그리고 건축은 시청, 군청, 구청등 관공서 건물은 도나, 시, 군이, 기타 공공건물은 관련기관이나 부서가 그 주체가 된다.

그외 거의 모든 건축물은 법인이나 개인이 건축주가 되는데 대체로 이들은 건축이나 도시관련법은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이 규정들을 계획이나 설계에 체계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일을 담당하는 건축사나 도시, 토목설계자들에 대해서 관련법에 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

겠다. 물론 법규에 규정된 이상 반드시 설계에 반영해야 하겠지만 보다 전문적인 의견과 사명의식을 갖고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건축주나 시행주체를 설득하고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디자인을 이끌어내는 데는 이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확고한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일선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행의지를 심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건축이나 도시시설 심의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지정된 지구의 시설물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건축위원회의 예를들면, 직할시, 도, 시, 군 및 구에 50인 이내로 구성되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그 주된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관한 사항
- 관련법(법 제8조 2항 및 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허가에 관한 사항
-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
-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이것을 볼 때 앞으로 접근권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주장하고 반영할 기구로서 이러한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건축위원회의 위원들은 대개 행정담당자, 건축학과 교수, 건축사, 기타 관련부서에서 파견된 자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이 편의시설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사명감을 갖게 된다면 그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현재의 국회에 해당되는 지방의회를 설득하고 그들을 통해 관철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 규칙에서 유보 또는 제외된 많은 시설, 건축물에 대한 것들인데 이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 <예상되는 문제점>

이 규칙안이 실시된다고 해도 건축주나 정책입안자, 시공자등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우리 도시의 실태를 보면 보도나 정류장, 교통시설등이 비장애인들도 이용이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장

애인들의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물의 건축주들은 가능하면 이것을 기피하려 할 것이다. 실제로 시나 구청의 건축심의를 해보면 건축주들은 법에 규정된 그 이상의 시설이나 설비는 좀체로 하려하지 않는 것을 흔히 보게 된다.

공사비의 증가, 가용면적의 축소등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의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이 규칙을 적용받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며 비록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갖추고 형식적인 것이 되기 쉽다는 점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예를들면,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중소규모 건물의 경우, 건축주나 설계자는 가능하면 그 범위를 넘지 않아서 이 규정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나친 기우일지는 모르나 법의 강제규정이 아닌 사항들은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 3. 사후관리의 문제

최근 교량사고의 원인중 하나가 사후 관리상의 문제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시공 당시는 비록 제대로 시공했다 할 지라도 그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없으면 갖가지 핸디캡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수시로 도로가 파헤쳐지고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이를 감시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 단체가 주축이 되어 도시, 건축시설 전반을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을 지자체의 상설기구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을 복지관련과나 건축, 도시, 도로과에서 관장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을 행정력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그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현재 환경관계 단체나 소비자 단체들이 하고 있는 역할과 같이 장애인 단체들도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그러나 아무튼 현재와 같이 해당부서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고 이를 총괄하는 기구가 없다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고 해도 현재와 같은 혼란과 책임회피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4. 지방자치제에 있어서의 과제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현재 중앙집권적인 통제체제가 지역단위의 체제로 전환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지역중심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역개발에 앞장서게 됨으로서 지역발전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큰 사업들이 중앙정부차원에서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각 도시에서 자발적으로 일을 하기가 어려웠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실현되면 무엇보다 시민과 행정당국과의 거리가 보다 가까워 질 것이므로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전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의 시민단체로서 선의의 권리행사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요구를 수용하고 시행할 주체가 지금의 국회나 중앙정부가 아니라 각 지방의 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각계 각층의 이익집단들이 각각의 목소리를 높여 갈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설득하고 타협해 나가야 할 대상이 현재보다 더욱 복잡해질 것도 염두에 두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 나름대로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설화된 전문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편의시설 문제는 주장만 갖고 나가서는 설득력이 약하다. 보다 전문적인 자료를 가지고 대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안제시가 가능해야 한다고 본다.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도 전문분야에서 막히게 되면 더이상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화된 연구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며 그 전문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행정당국을 리드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관련단체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설기구가 있어서 시설의 설계, 시공, 사후관리를 점검하고 기술적으로 지도 및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도나 횡단보도, 지하철등 제반 도시시설들은 행정당국이 앞장서지 않으면 시행불가능한 것들이며 각 건물의 출입구나 내부통로, 화장실 등은 건축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해결 가능한 것들이다. 이 일은 결국 사회전체가 관심을 갖고 동참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매스컴이나 시민운동단체의 협조를 얻어

일본에서와 같이 <장애인 복지 모델도시 만들기> 같은 운동이 범 시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본 궤도에 오르면 이러한 것들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 도시들은 장애자 편의시설에 대한 선의의 경쟁이 시작될 것이며 장애인 관련단체들은 외국이나 타도시의 사례를 들어 개선을 촉구하고 리드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담당자들에 대한 전문지식의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장애인 자신들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 자신들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고 주장할 것은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로 하여금 항상 달라고 주장만 한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편의시설 문제도 어떤 동정심에 호소해서가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떳떳하게 주장해 나갈 수 있도록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장애인 자신들도 변해야 할 때인 것이다.

## •제2부제 2•

### 법률적 의미로 본 장애인 접근권

강경선(방송대 법학과 교수)

## 법률적 의미로 본 장애인 접근권

강경선(방송대 법학과 교수)

### 1. 장애인에 관한 법제 현황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의 최고이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이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인 내용들이 같은 조문의 제2항에서 제6항까지 규정되고 있다. 이 중의 하나로 제5항은 “심신장애인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의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법으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이 있다. 장애인의 권리는 이외에도 여러 법들에 산재되어 있다. 「건축법」,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공원법」, 「도로법」, 「지방자치법」, 「교육법」, 「공무원법」들은 장애인에 관한 특별한 배려를 하는 별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장애인 복지제도의 기본법은 「장애인복지법」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구현한다는 입법취지를 갖는다. 이 법은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획기적으로 만들어졌던 「심신장애인복지법」을 다시 1988년 ‘장애인 올림픽’의 서울개최를 계기로 하여 만든 법이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은 국제연합이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에 내건 슬로건으로서, 여기에서 완전한 참여란 장애로 인한 제한적 사회참여가 아니라, 비록 장애가 있으나 이를 극복하도록 각종 재활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사회적/ 물질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보장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훈시적/ 임의적 규정형식을 띠므로해서 장애인의 복지수급권을 구체적 권리로서 보장하는 데는 미미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장을 위해서는 먼저 법체계가 정리되어 장애인의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법에 대한 접근로를 반듯하고도 친절하게 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2. 장애인의 접근권

### (1)의의

1993년 6월 25일 세계인권대회의 결과로 채택된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의 제3부에는 장애인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다. “세계대회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보편적이며 따라서 따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장애인들을 포함하는 것임을 재확인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명과 복지, 교육과 노동, 독립적인 삶과 사회 모든 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 대하여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 차별이나 기타 소극적인 차별적 처우도 그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세계대회는 각국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이들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줄 입법을 채택하거나 체계화할 것을 촉구한다.”

여기에서 보이고 있는 접근권(right to access)은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권리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70년대까지의 법학에서만 하더라도 접근권 개념은 전혀 논급이 되고 있지 않다가, 80년대 들어서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된 새로운 용어라 하겠다. 이런 개념이 새롭게 요청된 이유에는 현대 법치주의의 실질화라는 시대적 배경을 들 수 있다. 법학상에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나 절차적 정의와 같은 이념들이 전에 없이 강조되는 것이 오늘날의 기본추세이다. 말하자면 접근권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들을 ‘실체적이고도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창안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기본권의 체계상으로 접근권의 위치를 설명해보자. 크게 보면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들은 두개의 축, 즉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으로 나누어진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적 기본권은 자유권을 보다 더 실효화시키기 위해서 생겨난 기본권이다.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서 제1조에 나타나 있듯이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로부터 나오는 자유권의 이념이 형식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

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위함이 바로 사회적 기본권의 출현목적인 것이다. 이렇듯 사회적 기본권은 그 자체로서 이미 자유권에 대한 접근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상 보장을 통하여 종래의 자유권이 실질화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사회적 기본권 자체가 형식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것은 예컨대 사회적 기본권이 가장 잘 보장되었다는 바이마르공화국이 극도의 재정적 파탄으로 인하여 사회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기할 수 없었다는 역사적 실제나 서구 복지국가의 허구적 측면,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여 주었던 기본권의 사회적 보장의 취약성 등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동안 사회적 기본권은 명목상의 기본권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헌법학자들은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과거에는 프로그램적 권리로 이해하다가, 오늘날에는 추상적 권리로서 이해한다.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권리는 그야말로 거세된 권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사회적 기본권은 바로 이러한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생활최저선(national minimum) 확보운동을 별도로 벌여야만 구체성을 띠게 되는 그런 기본권인 것이다.

### (2)법적 근거

이런 배경에서 현대의 헌법이론은 자유권적 기본권이나 사회적 기본권이나를 막론하고 그것의 형식화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접근권이라는 개념을 생해 내었다. 접근권은 모든 기본권의 실질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리라는 것이다. 접근권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접근권의 법적 근거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접근권이 권리로서 인정받고 있는 분야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이다. 헌법에서도 접근권이 명문으로 규정된 것은 없다. 그런데도 헌법학자들은 공히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인정하는 논거가 같은 것은 아니다. 국민주권주의(제1조), 언론의 자유(제21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등을 종합적으로 하여 근거로 삼거나(권영성 교수), 언론/출판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에서 도출하는(허영 교수) 견해가 있지만 뚜렷하지 않은 실정이다. 분명한 것은 국민은 이 나라 헌법의 주인인 동시에(헌법 제1조) 기본권 보장의 주체(헌법 제10조)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 또한 당연히 하나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헌법 제37조 제1항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관계법(「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추후보도청구권은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권이 법률에서 구체화된 예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접근권은 어디에서 근거를 찾아야 할까? 우선 이미 글의 서두에서 인용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장애인의 접근권은 좋은 근거가 된다. 국제연합의 인권지침은 당연히 우리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도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헌법의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는 정신과 본문 제1조, 제10조, 제34조 제1항과 제5항, 제37조 제1항이 장애인의 접근권에 관한 헌법상 근거조항이 될 것이다. 이런 상위법에서 도출되는 접근권의 개념은 하위 입법들에 의해서 구체화되어야 맞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8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야 「장애인복지법」이 만들어지고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현대적 감각의 입법이 실현된 형편이며, 그나마도 대단히 명목화된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실질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에서 접근권개념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 (3) 법적 성격

접근권이라는 개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것이 무엇이며, 또 어느 범위에서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것인가는 접근권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도 그렇게 잘 정리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접근권이란 용어는 대단히 폭넓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둔다. 이렇게 해서는 법적 권리로서 보장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접근권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둘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접근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이든 사회적 기본권이든 그것이 충분히 실현할 수 없는 장애에 부딪혀 있을 때 기본권의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주어지는 권리인 것이다.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 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접근권은 일단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받아들여진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흔히 권리의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엄격히 들여다보면 접근권은 결코 수단이 될 수 없고 그 자체가 이미 권리실현과정이고 동시에 삶의 과정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는 접근권은 자유권이나 사회권이나에 포함시킬 수 있는 실체적 권리임을

알 수 있다. 언론의 자유에 있어서 접근권이 그 어느 하나의 권리로 분류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복합적 성격이 있듯이 장애인의 접근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복합적 성격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접근권이란 용례가 경우마다 다른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접근권으로 더 잘 알려진 접근권은 자유권을 더욱 더 자유권답게 만들기 위한 권리이며, 사회권을 더욱 더 사회권답게 만들기 위하여 대국가적/ 대사회적으로 일정한 급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과, 동시에 그것이 수단적 권리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서 내용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점에서 사회적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 권리의 성격상 대국가적 급부청구권에 그치지 않고 대사회적인 청구권으로 확대되어야 마땅하다는 측면에서 보다 선진화된 복지국가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본권이라고 생각된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서도 일권리의 인정과 정보공개청구권, 정정보도청구권들이 국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기업인 언론기관에 대해서까지 인정되는 것과 같이 접근권은 보다 현대적인 발전된 사회적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다. 대규모화된 국가권력과 사회집단들의 세력으로부터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발전된 사회적 기본권개념이 더 많이 요청되는 것이다.

## 3. 현행 장애인 복지법제의 내용

위와 같이 발전된 사회적 기본권으로 이해할 경우 장애인의 접근권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생각해보자.

이러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제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장애인복지법」과 그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제는 장애인에 관한 복지조치를 1)예방조치(예방, 조사 및 등록), 2)재활조치(의료, 교육, 직업, 사회재활), 3)부양조치(생계보조수당)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 1) 예방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그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보급,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의 추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 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이나 기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상태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9조). 시,도지사는 장애상태의 변경에 다른 장애급수의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명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장애인정 및 급수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중앙장애인정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에 지방장애인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같은 법, 제19조 제6항).

## 2) 의료재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습득 또는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장구 기타 용구를 제공함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기타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의료 및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자립훈련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3호). 복지실시기관은 의료비의 부담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의료비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21조). 복지실시기관은 보장구의 구입이나 수리비용의 부담이 곤란한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지/보조기/휠체어/보청기/점판 및 점필/흰지팡이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를 교부 또는 수리하거나,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 3) 교육재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그 연령/능력/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라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및 특수교육시설의 설치를 도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2조). 복지실시기관은 중증장애인 부양하는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교육비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22조).

## 4) 직업재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직업훈련 및 직업소개의 실시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또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 및 직역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상담의 결과, 공공직업훈련시설 또는 사업내 직업훈련시설이 행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시설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소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 5) 사회재활

사회재활은 장애인이 경제적 물리적인 사회계약 요인을 극복하고 자립/자활함으로써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향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고용보장조치, 자립지원조치, 편의시설조치, 여건향상조치 등으로 세분된다.

이 중 고용보장조치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자립지원조치와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사업의 개시, 취업,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능의 습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비롯, 제작품의 구매조치, 전매품판매인의 지정, 우표류 판매업의 허가, 시설의 우선이용, 세제상의 조치,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같은 배려가 마련되어 있다.

또 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교통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 설비의 정비 등에 관하여 적절한 배려가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3조 제1항)와 같은 편의시설조치가 마련되고 있다. 이를 받아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공동주택/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할 시설이나 설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1. 도로: 미끄럼 없는 평탄한 보도, 시각장애인 유도용 바닥재로 마감한 단차없는 횡단보도

2.공원: 평탄한 통로 또는 경사로, 저상매표소, 저상음료대, 장애인전용변소, 장애인전용관람석, 장애인전용주차장,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로, 시각장애인용 신호종

3.공공건물: 평탄한 출입구 또는 경사로, 계단이나 복도의 손잡이, 장애인전용변소, 장애인전용주차장, 장애인전용승강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로, 안내표시

4.교통시설: 음향신호기, 장애인승차대, 저상매표소,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로, 안내표시

5.통신시설: 장애인전용공중전화

6.공동주택: 평탄한 출입구 또는 경사로, 장애인전용변소

7.기타 공중이용시설: 평탄한 통로 또는 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장, 장애인전용변소,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로

이런 편의시설에 대한 규정 이외에도,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날 설정, 장애인단체의 육성, 문화환경의 정비, 체육의 진흥, 주택의 보급 등과 같은 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다.

## 6)부양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에 관하여 평생 필요한 보호 등을 행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에 대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생계보조수당 지급의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34조).

## 7)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7가지 종류가 있다. 즉 장애인 재활시설, 장애인치료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이 있다(같은 법, 제37조).

## 4.장애인 접근권의 내용

장애인의 접근권은 위에서 알아본 장애인 법제를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서 인정되어야 할 권리이다. 따라서 위의 분류에 따르면, 1)예방조치, 2)재활조치, 3)부양조치

등 제단계별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만 법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장애인의 접근권은 1)예방조치단계에서의 접근권, 2)재활조치단계에서의 접근권, 3)부양조치단계에서의 접근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개는 재활조치 중에서 특히 편의시설조치에 대한 접근권의 확보가 특별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건사회부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한 장애인편의시설 및 세부설치기준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시설 설치자에 대한 준칙을 제시하고자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안)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 사이에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바뀌어 말로나마 앞으로 복지에 좀 더 역점이 주어질 전망도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내실있는 복지정책이다. 이미 5공화국에서부터 복지국가의 실현은 국정지표의 하나로 내걸려졌던 터이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복지정책은 당장 눈에 띠는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뒤로 미루어져 온 것이다.

금년도 보사부에서 마련한 「편의시설규칙」도 「장애인복지법」이 만들어진지 5년이 넘어서 겨우 만든 법치고는 너무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규칙의 주요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시설로 하고, 장애인 전용시설 및 불특정다수인의 이용도가 높은 일정규모이상의 공공시설에 한하여 의무시설로 정하고 그 이외시설은 권고시설로 규정한다.

2) 다른 법령에 별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정하여진 사항은 그 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

3)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기존 시설, 서비스의 정비는 권고사항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이 규칙 시행후 5년 이내에 개선토록 한다.

4) 시/도지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한다.

5) 대상시설/서비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규칙의 세부설치기준에 적합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토록 한다.

6) 이 기준에 부적합한 의무시설/서비스는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가 시정 요구토록 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자는 1년 이내에 이 기준에 적합하게 시정토록 한다. 만약, 시정요청을 받은 자가 기한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에 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안내표시를 하

도록 한다.

8)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사부의 「규칙」은 이전보다는 구체성을 띠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그런데 법과 시행령의 내용을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직전 단계라 할 수 있는 「규칙」은 누가 보아도 구체성을 띠고 현실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규칙」에서 마저도 추상적이며 막연한 상태에 남아 있으면 결국 시행에 이르지 못하고 말 것이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장애인의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 관련법들에서 보이는 법실현상의 장애적 요인들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어찌보면 이제까지 여러 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장애인에 관한 배려규정들을 한자리에 모아 통합하는 법규와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책임부서가 정해지고, 책임수행을 위한 예산지원, 법규위반시 그에 대한 벌칙의 마련 등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법의 실효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1990년도에 제정된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이런 점에서 탁월한 측면을 보여준다. 고용주로 하여금 일정 자격있는 장애인에 대한 취업차별을 방지시키며, 식당/호텔/쇼핑센터/그리고 사무실과 같은 일체의 공공시설을 장애인에 대하여 그 출입과 사용을 완벽하게 보장할 것과, 철도/항공기/기타 공공교통시설에서 광범위한 서비스를 규정하고,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시설을 확보하며, 자연환경에 대한 이용의 배려, 변호사비용의 부담, 정부기관에 의한 인적, 물적, 기술적 원조에 관한 규정을 예측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정하고 있다. 영미법과 다른 대륙법계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로서는 미국의 법제 방식을 그대로 따라 갈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법의 시행을 위한 상세하고도 용의주도한 배려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곧 정부당국자의 열성과 진지성의 문제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진정 장애인의 복지에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마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도나 시설에 관한 정부측 담당자, 그리고 관계분야의 전문가들, 부담을 지게 될 기업이나 시민들, 동시에 이를 이용하게 될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 각자의 고충과 함께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양보하기도 하며, 기한을 유예하기도 하고, 타협을 하기도 하고 하면 일정한 원칙과 구체적 모델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모델을 기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시킨다면 어렵지 않게 좋은 방안이 마련되리라고 본다. 문제는 민주적 방식의 채택에 있을 것 같다.

## 5. 지방자치시대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

「장애인복지법」 제3조는 “1)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2)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1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한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관련하여, 제2항 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의 하나로써 심신장애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예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장애인에 관한 복지제도는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행하여야 할 사업이 된 것이다.

그동안 모든 복지정책은 당연히 국가 일방에 의한 사업이라고 인식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복지행정은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사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의 원칙에 기조를 둔 과거의 복지정책은 결국 국가의 부는 획득할 수 있었을지언정, 정작으로 귀속되어야 할 복지의 주체자는 중심이 아닌 주변에 서서 수혜자적 위치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보호는 규범으로서 이해되어야 하고, 개인의 권리라는 다수의 지배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법적 과제이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배려와 존중’(equal concern and respect)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장애인은 현실에서 소수자의 대우를 받고 있다. 그래서 항상 법제도의 중심에서 벗어난 지위에 처해 있다. 이제 장애인은 자신의 고유한 권리로서 국가의 복지를 향유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그동안 복지의 중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장애인에게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장애인에게 법적으로 접근권이 필요하고 이것이 설사 주어진다 하더라도 접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장되어야 할 접근권은 ‘접근 서비스’라고 부를만한, 다시말해서 접근권에까지 안내하는 그런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제까지 장애인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대기업을 위시한 전국민의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구조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여러가지로 열악한 지위에 처해 있는 장애인에게 스스로 권리를 찾을 것을 요

구하는 것은 부당하기조차 한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의 권리행사를 조력할 인원과 시설, 장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현재 있는 복지위원이나 아동위원들을 더 많이 더 유능하고 더 활동적으로 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예산상 힘들다면, 예컨대 군인의 기능을 일부 바꿔서 대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배속시켜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복지정책일반과 장애인복지의 확충은 국가가 얼마나 이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가지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접근서비스에 바탕을 두고 장애인이 접근권을 실제적으로 행사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장애인은 적어도 우리 헌법과 장애인복지법이 선언하고 있듯이 차별을 받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단계에 이르면 장애인의 권리보장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높이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권리보장이 형식 논리적 순서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무수한 역동적인 도전과 시도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애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영역에 스스로 참여하는 적극성을 보일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는 접근권보유와 실체적 권리행사의 결과로 주어지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권리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이기도 한 것이다. 아주 열악하나마 주어진 여건 속에서 힘을 모아 참여를 이루고, 이를 통해 여건을 조금 더 개선시키고 더 좋은 여건에서 또다시 더 많은 참여를 이루어 마침내 완전한 참여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의 방법은 흔히 두가지로 압축된다. 그 하나는 우리 헌법이 대의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대의원을 선출시켜서 입법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선거법에 따라서 일정 정당을 후원해서 다수의 의석을 얻어내는 것이 그 목표가 된다.

또 하나의 참여방법은 시민운동에 의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그동안의 실정은 대의제가 과행적으로 운영되고 그 권위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시민운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의제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권리를 항상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단결과 홍보, 주장, 설득 등을 해내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 국가차원의 운동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지방자치 차원에서 조례를 얻어내는 운동, 그래서 어떤 지방에서 먼저 모범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실행시켜보는 운동 등이 필요하리라 본다.

현재의 여건---복지서비스----접근권 ----실체적 권리---절차적 권리

참여를 위한 운동-----참여-----완전한 참여

•**부록제 1**•

##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기준설정과 법적실행방안

이기하(보건사회부 장애인복지과 과장)

##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기준설정과 법적실행방안

이기하 (보건사회부 장애인복지과 과장)

### 1. 서 언

장애인복지정책의 목표는 첫째, 장애인이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으며, 둘째,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셋째, 모든 장애인이 국가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인적·물적 재활서비스를 통한 장애인의 능력 개발, 소득보장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회인식개선, 제도개선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간의 장애인복지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장애인들이 사회의 물리적 장벽때문에 여전히 거리로 나오길 꺼려한다는 것이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장애인의 활동편의를 도모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실행토록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2. 편의시설 설치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법령에서 일부항목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 표에서 나타나듯이 부족한 실정이다.

('93. 12말 현재)

계	음 향 신호기	유 도 바닥재	보도턱 낮추기	공 중 전화기	경사로	화장실	전 용 주차장	지하철 유도바닥	기타
37,999	2,040	7,690	17,104	2,739	4,791	2,300	715	159	461

이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조항이 만들어진 이후 신축되는 시설물에만 적용되고 기존 시설물에의 설치를 강제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여러 관련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장애인의 연속된 이동을 고려한 통합된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우며,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의 다양한 항목의 편의시설 설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부설치기준의 미비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3.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제정의 추진 경위

1981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아 각국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심이 시작되었고, 같은해 우리나라에서는 심신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공공시설 등에 편의시설 설치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그 이후 1984년부터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부분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규정이 꾸준히 삽입되게 되면서 편의시설이 서서히 눈에 띠기 시작하였고 1988년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한층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9년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도로, 공원, 공공건물, 교통시설, 통신시설, 공동주택,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편의시설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자에게 대한 벌칙까지 규정하여 강제성을 띄우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편의시설 설치의 세부기준 연구가 부족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설치기준 규정은 뒤로 미루게 되었고, 이후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연구소에 편의시설 세부 설치 기준 연구를 의뢰하는 등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장애인계의 의견수렴, 검증 등 편의 시설·설비의 세부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작업을 하여, 최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설치기준(안)을 마련, 지난 7, 8월 관련부처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청취 및 조정을 하고 9월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를 앞두고 있다.

## 4.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 예고안

### 1) 적용대상 시설·설비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시설이어야 하므로 모든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실효성을 위해 우선 단계적인 방법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대상시설 및 대상시설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의 항목은 장애인의 이용도, 절실성, 비용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선정하였다.

즉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상시설·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대상시설을 결정은 각 시설별 특성을 감안하여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읍·면·동사무소 등 근린공공시설, 교통시설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포함시켰으며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등은 비용의 문제를 감안하여 영세한 시설은 제외하고 일정 규모 이상을 대상시설물로 하였다.

편의시설은 의무시설, 권고시설로 나누어 규정하였는데, 화장실, 경사로, 횡단보도 턱낮추기 등 장애인의 생리적, 사회적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범위내에서 의무시설로 규정하고, 그 외의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이용도 및 비용문제 등을 고려하여 권장 시설로 구분하여 시설 설치자의 자발적인 결정 및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인 설치지침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축된 기존시설·설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자발적으로 정비하도록 하였으나, 장애인의 이용도가 높은 다음의 시설은 5년 또는 10년 이내에 정비하도록 강제 규정하였다.

정 비 대 상 시 설	정 비 기 한	
	5년이내	10년이내
횡단보도	○	
읍.면.동사무소, 경찰관서, 우체국, 보건(지)소, 공공도서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5개 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	
종합병원	○	
장애인특수학교	○	
여객자동차 터미널,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무역항에 설치된 항만종합여객시설	○	
철도역사(통일호 이상의 열차가 정차하는 역에 한함), 도시철도역사		○

## 2) 세부설치기준

기술적 세부설치기준은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참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계정보가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의무시설 뿐만 아니라 권고시설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기술적 표준이 너무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을 경우 과도하게 엄격하여 그 실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수적인 표준을 규정하고 그 내용도 반드시 이행할 표준,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보다 배려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내용을 표준으로 하여 설계시 시설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일정재량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 3) 관리

편의시설 설비의 설치규칙 규정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설비를 한 자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7조 제3호의 벌칙(5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기준 규정의 더욱 확고한 실효성 발휘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벌칙의 상향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건축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삽입하여 보완하는 등 향후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 5.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의 편의시설 및 설비의 홍보방안

내년부터 개막되는 지방화시대에는 현재의 중앙통제하에서보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과 행정당국이 보다 가까이서 그 지역의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번에 마련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는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내의 적용대상 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그 계획에는 이미 설치된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실태 및 정비 계획 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대수선시의 설치계획과 이에 따른 홍보, 계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지방화시대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벽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의 입안 및 실행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편의시설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다.

인식제고방안으로 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simulation exercise를 장애인의 날등 년 1-2회 실시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simulation exercise란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체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휠체어를 타보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안경을 착용하고 걸어본다면 가, 소리를 들을 수 없도록 제작된 헤드폰을 쓰고 걸어도 보는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보는 그것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건축전문가 및 건축주등 시설설치자의 의지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사료되므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된다.

## 6. 결언

1981년 심신장애인복지법 제정 이후 10여년간에 걸쳐 장애인복지의 물질적 발전뿐만 아니라 장애인 본인 및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현격한 발전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정 추진이 복지선진 외국에 앞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법령의 강제력에만 미룬다면 좋은 제도도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지금부터는 장애인 본인의 자활·자립의지와 시설 설치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실효성을 좌우하리라 생각한다.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노력과 의지로, 우리 사회 전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낭비가 아닌 필요불가결한 시설 · 설비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다.

## >

### 편의시설별 설비 내용

편의시설	설비내용
도로	횡단보도턱 낮추기 등 미끄럼없는 평탄한 보도, 점형 유도블록
경사로	기울기, 유효폭, 창, 손잡이, 바닥재료
출입구(문)	점형 유도블럭 등 장애인 접근가능 설비, 유효폭, 회전문금지, 손잡이
복도	유효폭, 바닥, 손잡이(장애인 전용시설)
계단	유효폭, 디딤판과 철면의 높이·너비, 손잡이, 계단코, 점자표시판
장애인용엘리베이터	유효바닥면적, 출입구 폭, 바닥틈새, 문의 개폐장치, 호출버튼, 조작반등의 설치물 손잡이, 점자표시판, 점멸등, 음성신호장치등 표시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유효폭, 속도, 손잡이, 디딤판
휠체어리프트	유효바닥면적, 크기, 안전장치
장애인용 화장실	출입문의 유효폭, 공간면적, 손잡이, 바닥재
세면대	유효바닥면적, 높이, 손잡이, 거울
욕실	출입구(문)의 유효폭, 바닥, 욕조의 크기, 손잡이, 수도꼭지
샤워실, 탈의실	출입구(문), 공간크기
객실, 침실	침실의 구조, 바닥, 기타 부속시설
장애인용 관람(객)석	관람석의 구조 및 숫자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장소, 공간크기 및 기울기, 바닥재료
시각장애인용 유도로	유도블록의 규격, 색상
교통시설	저상매표소 및 자동발매기, 개찰구의 폭, 승강기의 기울기, 추락방지용난간,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음향신호기
통신시설	장애인 공중전화대의 규격, 우체통의 높이, 접근용이성
접수·작업대	하부공간, 높이, 바닥면적
음료대, 매표소, 판매기	높이, 유효바닥면적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치대상시설

구분	대상시설		편의시설	적용규모										
	도로	경사로		출입구	문	복도	계단	승강기	체육실	세면대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공공 건물 및 공공 이용 시설	숙박 시설	호텔, 관광호텔, 국민 호텔, 한국전통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당해용도에 쓰이는 비단면적의 합계가 3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매 시설	도·소매점		당해용도에 쓰이는 비단면적의 합계가 3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해용도에 쓰이는 비단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500석 이상의 관람석을 설치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극장 집회 시설	회의장, 공회당, 예식장	당해용도에 쓰이는 비단면적의 합계가 3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동경기관람장, 경마 장, 자동차경주장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시 시설	박물관, 미술관, 과학 관, 기념관, 산업전시 장, 박물회장	당해용도에 쓰이는 비단면적의 합계가 3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물원, 식물원, 수족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 건물 및 공공 이용 시설	방송 통신 시설	방송국	당해용도에 쓰이는 비단면적의 합계가 1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신전화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여객시설, 항만 종합여객시설												
		도시철도역사												
		지동차정류장												
		교통신호기												
		장애인용 공중전화												
		우체통												
		아파트												
공동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공동숙소													
	장애인용주택													

•**부록 2**•

## 도시환경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미래상

조성룡(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사무국장)